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·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도록 「과학기술기본법」이 일부개정(시행 2021.10.21., 법률 제18069호, 2021.04.20. 공포)됨에 따라 성별 등 특성분석을 기술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하고,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

-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범위에 규정함(안 제23조제2항제4호)

나.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

-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(안 제40조의2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1. 8. 13. ~ 9. 23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

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
2.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
3.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
4.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
5.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) ① (생략)	제23조(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</u>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) ① (생략)	제40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
	<u>1.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</u>
	<u>2.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</u>
	<u>3.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</u>
	<u>4.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지표</u>
	<u>5.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표</u>
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략)	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64